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(제 회)	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
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총리 (공정거래위원회 소관)
제출 연월일	20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□ 동일인은 대기업집단 제도가 도입된 1986년부터 사용된 용어로서 대기업집단 규제의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개념임

□ 하지만, 공정위는 현재까지 동일인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거래법상 기업집단의 정의로부터 추론되는 동일인의 정의에 따라 제도를 운영해 왔음

○ 제도 초기에는 변수가 적었으나, 2·3세로의 경영권 승계, 외국 국적을 보유한 동일인 및 친족의 등장, 다양한 지배구조의 기업집단 출현 등 동일인 판단과 관련한 다양한 쟁점이 발생

○ 학계 등에서도 동일인 판단에 필요한 기준 및 동일인 확인 절차가 없어 선정 과정이 명확하지 않으며, 특히 외국인 동일인 판단 문제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의견이 제기됨

□ 이에,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 및 예외요건 등을 명문화하여 동일인 판단의 명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는 한편,

-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확인 절차에 관한 세부규범을 마련하여 동일한 판단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, 수범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이번 시행령 개정 및 지침 제정을 추진하게 됨

3. 주요내용

-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, 이러한 자연인이 없는 경우 회사 또는 비영리법인·단체를 동일인으로 보도록 하는 동일인 판단의 일반원칙을 규정
 - 동일인 판단의 핵심 요건은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 여부이므로,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이 있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확히 하였다.
 - 아울러, 해당 기업집단을 지배하는 자연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, 의사결정의 정점에 있는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하였음
- 동일인 제도의 기본 취지, 국적 차별 없이 적용되는 규범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법인을 동일인으로 판단할 수 있는 예외사유를 명확하게 설정함으로써, 동일인 제도의 합리성과 정당성을 강화
 - 동일인을 자연인으로 보든 법인으로 보든 기업집단 범위가 동일하여야 함(본문).
 - ①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의 최상단법인 외 국내 계열사 주식보유, ②친족의 국내 계열사 주식보유 또는 경영 참여, ③해당 자연인·친족에 대한 채무보증·자금대차가 없어야 함(제1호~제3호)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없 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8조의2(기업집단 지정 등에서의 동일인의 기준) ① 출자구조, 최고직 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 본다.

②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본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해당 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의 국내 계열회사의 범위(단, 제5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는 포함하지 않음)가 일치하는 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집단의 그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수 있다.

1. 해당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(단, 동일인이 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)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

2. 해당 자연인의 친족 중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
3. 해당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 대차가 없을 것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38조의2(기업집단 지정 등에서</u> <u>의 동일인의 기준) ① 출자구조,</u> <u>최고직위자 등을 고려하여 기업</u> <u>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연인</u> <u>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자연인</u> <u>을 그 기업집단의 동일인으로</u> <u>본다.</u> <u>②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는</u> <u>자연인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</u> <u>해당 기업집단을 사실상 지배하</u> <u>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</u> <u>는 단체를 동일인으로 본다.</u> <u>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, 해당</u> <u>자연인을 동일인으로 볼 경우와</u> <u>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</u> <u>단체를 동일인으로 볼 경우의</u> <u>국내 계열회사의 범위(단, 제5</u> <u>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회사</u> <u>는 포함하지 않음)가 일치하는</u> <u>기업집단이 다음 각 호의 요건</u> <u>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해</u> <u>당 기업집단의 그 국내 회사나</u> <u>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동일인</u> <u>으로 볼 수 있다.</u>

- | | |
|--|---|
| |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<u>해당 자연인이 국내 계열회사(단, 동일인이 되는 국내 회사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제외한다)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을 것</u>2. <u>해당 자연인의 친족 중 국내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 또는 임원 재직 등의 방법으로 경영에 참여하는 자가 존재하지 않을 것</u>3. <u>해당 자연인 및 그 친족과 국내 계열회사 간에 채무보증이나 자금대차가 없을 것</u> |
|--|---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	
연 락 처	(044) 200 - 4936